

발명교사 인증제 등을 위한 발명교육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22. 8.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발명교사 인증제 등을 위한 발명교육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8월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2. 6. 21. ~ 2022. 8.22.
- 주관연구책임자 : 전성태 부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1
II. 발명교육법 개정안 검토	3
1. 발명교육법의 의의와 연혁	3
2. 발명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4
3. 발명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5
가. 발명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주요 조문 개정(안)	5
나. 개정취지	6
다. 주요 개정내용	6
라. 주요 개정내용 해설	11
III.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	13
1. 제정의 필요성	13
2.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	13
3. 고시안 주요 규정 해설	15
가. 이 고시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15
나.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등급별 (재)인증 상세기준 및 인정범위·인정기간을 규정(안 제2조 내지 제3조)	16
다.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 양식을 규정(안 제4조)	19
라.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 인증평가시험의 시행 및 과목(내용), (발명교사 및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발급 서식 등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따른 상세 내용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	20
마. 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9조)	22

바.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의(안 제10조)	22
[별첨 1] 발명교육법 시행령안	24
[별첨 2]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	52

I. 서론

2022년 6월 10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명교육법’이라 함)이 일부 개정되었다(시행 2022년 12월 11일). 이번 개정은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부여하며,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의 목적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추가함(제 1 조).
- 발명교육의 범위를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까지 확대함(제 2 조).
-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제 3 조의 2 신설).
-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제 9 조).
-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함(제 10 조)
-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 12 조의 2 신설).
-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제 12 조의 3 신설).
-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등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 13 조의 2 신설).

이러한 개정 발명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명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개정 발명교육법에는 “발

명교육 전문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 절차, 인증평가지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고시의 제정도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 발명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반영하고, 행정규칙으로서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을 위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발명교육법 개정안 검토

1. 발명교육법의 의의와 연혁

‘발명교육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 14590 호, 2017. 3. 14., 제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발명교육법 제 1 조).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은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발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중·고교 등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명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표 1] 발명교육법의 개정 연혁

순번	법률번호	개정일	유형	주요 내용
1	법률 제14590호	2017. 3. 14.	제정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4조).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0조). - 정부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3조).
2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3	법률 제18887호,	2022. 6. 10.	일부개정	-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제3조의2 신설). -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제9조). -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제10조) -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2. 발명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발명교육법’은 법률 제18887호로 2022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부여하며,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발명교육법의 주요 개정사항 >

- 이 법의 목적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추가함(제1조).
- 발명교육의 범위를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까지 확대함(제2조).
-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제3조의2 신설).
-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제9조).
-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함(제10조).
-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 등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조의2 신설).

이러한 개정 발명교육법 제9조의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제10조¹⁾의 광역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에 따라 발명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안 마련이 필요하다.

3. 발명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가. 발명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주요 조문 개정(안)

1) 발명교육법 제10조

발명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조문은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 지원 등), 제9조(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 제10조(발명교육센터 등의 교육실적 자료 작성·관리 등), 제11조(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제12조(발명교사 인증심사), 제13조(발명교사 인증의 절차), 제14조(발명교사 예비인증), 제15조(발명교사 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발명교사 재인증), 제19조(업무의 위탁) 이다.

나. 개정취지

‘발명교육법’이 개정(‘22.06.10 공포, ’ 22.12.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법 제9조제7항)’,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발명교육법 신설·개정 조문 중 위탁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현행 업무의 위탁규정(시행령 제13조)에 반영하려 하는 것이다.

다. 주요 개정내용

첫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발명교육센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문에 통합 규율(안 제7조 내지 제10조)하였다. 초·중·고 등에 설치·운영 중인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관리하며, 전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발명교육 품질을 제고하고, 교육기관 운영을 내실화하였다.

둘째,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을 신설(안 제11조 내지 제16조)하였다.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발명교사 인증기준(인증의 등급과 요건), 심사방식, 절차 및 인증서 발급, 예비교원 인증, 유효기간, 재인증 등을 신설하여, 창의·융합형 발명인재 양성에 기여하였다.

셋째,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업무를 시행령에 반영(안 제19조)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접수·평가지험의 실시 등 인증 업무,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선도학교에 대한 업무 지원 등 발명교육 지원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을 명확화하였다.

넷째, 용어 수정 및 조문 번호 조정(안 제3조, 제17조, 제18조,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하였다. 소속 학교를 관할 학교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며(제3조), 조문 신설(제11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종래 조문 번호(제11조 및 제12조)를 조정(제17조 및 제18조)하였다.

[표 2] 발명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조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법 제10조제1항</u> 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u>법 제10조제2항</u> 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u>운영조직 구성 및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u>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 <u>운영과</u>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 지원 등)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지식재산 전문가의 파견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9조(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가진 전담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 ②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를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 ⑤ 발명교육센터 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발명교사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 등의 교육실적 자료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발명교육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2급, 1급, 명인 등급으로 구분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

2.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 및 실무경력을 갖출 것

3.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명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것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하, “예비교원”이라 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의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춘 사람은 예비 발명교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 발명교사 인증은 2급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발명교사 인증심사) ① 발명교사 인증심사는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시험은 2급, 1급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발명교사 인증의 절차)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

2. 평가시험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인증신청서 및 인증 등급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2.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사를 인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1.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예비교원일 것
2.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 ④ 특허청장은 평가시험 합격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등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발명교사 예비인증) ① 특허청장은 예비교원이 제13조제3항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예비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에 의하여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발명교사 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발명교사 재인증)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인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2.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재인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재인증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부터 특허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재인증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 재인증신청서 등 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재교육, 연구와 각종 활동 지원 및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 업무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2조의2](#)에 따른 선도학교 등의 운영 지원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9.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10.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보조 지원
11. [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12.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 지원

라. 주요 개정내용 해설

(1)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및 지도교사 운영규정(안) (제7조 내지 제10조)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초·중·고 등에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나, 시·도별 거점 교육기관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개정 법률에서 거점 교육기관(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발명교육 체계를 ‘특허청-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²⁾로 개편하게 되었다.

또한 발명교육 품질제고 및 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센터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 배치도 의무화하였다.³⁾

발명교육법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및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기초 발명교육부터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체험·심화 교육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를 직접 관리함에 따른 비효율, 지역별 특화 곤란 등의 문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시·도 발명교육센터 총괄, 체험·심화 발명교육, 교사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3)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발명교육센터 교원 배치되었다. 총 222명(전임 117명, 겸임 105명, 전담율은 57%이다).

(2)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 신설(안 제11조 내지 제16조)

우수 발명교사 양성 및 검증을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규정을 근거로 ‘13년부터 시행하던 발명교사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⁴⁾ 개정 법률에서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로 인증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제9조제4항)하게 되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문을 거쳐 인증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령에는 인증기준, 심사방식, 절차 및 인증서 발급, 예비교원 인증, 유효기간 및 재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3) 업무위탁사항 반영 및 조문번호 조정 등(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발명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8개 업무⁵⁾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문(조항) 중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업무를 시행령(제13조)에 반영 및 명확화하였다. 이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 기준, 절차 등 조문신설에 따라 조문번호를 조정하였다. 시행령에는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접수·평가시험의 실시, 광역발명교육센터의 업무지원 등 발명교육 현장의 업무를 위탁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4) 부칙 개정

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일을 규정하였고, 기존 발명교사 인증제도 시행 전에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와 재인증 받은 자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4) 발명교사 인증 현황 : 마스터(명인) 21명, 1급 117명, 2급 1,368명 - 총 1,506명(누적)이다.

5) 법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내지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내지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의 업무

Ⅲ.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

1. 제정의 필요성

개정 발명교육법 제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발명교사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사항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발명교사의 등급별 인증 및 재인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 인증신청서 등 인증시행 공고 형식 및 방법을 비롯하여 평가시험의 과목, 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시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이하, ‘고시안’)은 총10개 조문(“제1조 목적, 제2조 등급별 인증 및 재인증 기준, 제3조 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제4조 인증신청서 등, 제5조 인증 시행 공고 등, 제6조 인증평가시험의 시행, 제7조 평가시험의 과목, 제8조 인증서 등의 발급, 제9조 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0조 재검토 기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및 재인증 기준) ① 인증심사를 위한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인증심사를 위한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등급별 재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

증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성적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재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인증 받고자 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재인증 접수 시작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조(인증신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인증 시행 공고 등) ①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인증평가 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평가지험의 시행)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영 제12조제1항 인증평가지험(이하 “평가지험”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지험의 과목)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험의 과목(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인증서 등의 발급) ① 영 제13조제4항 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제출서류 등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2. 영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심의
3.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심사
4.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 검토·심의
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 호, 2022. .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고시안 주요 규정 해설

가. 이 고시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안 제1조는 발명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나.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등급별 (재)인증 상세기준 및 인정범위·인정기간을 규정(안 제2조 내지 제3조)

제2조(등급별 인증 및 재인증 기준) ① 인증심사를 위한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인증심사를 위한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등급별 재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성적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재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인증 받고자 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재인증 접수 시작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별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별로 인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하여 고시안 제2조에서 규정한다. 고시안 제2조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1]

등급별 인증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등급	필수요건			선택요건(2항목 충족)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선행 등급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지식재산 능력시험
2급	4학점 또는 연수 6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1급	연수 12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3년	-	15점	20시간	15점	500점 이상
명	연수 180시간	7년	1급	30점	40시간	30점	600점

인	이상 (필수 : 집합교육 90시간 이상)		발명 교사				이상
---	------------------------------	--	----------	--	--	--	----

시행령안 제16조 제1항 각호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부여받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인증신청서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i)발명교육 이수 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또는 (ii)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발명교육 강의 실적, 연구·발명실적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시안 제2조 제2항은 재인증심사를 위한 기준을 별표 2로 규정한다.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2]

등급별 재인증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등급	선택요건(1항목 충족)					비고 (평가 시험)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2급	연수 30시간	1년	10점	10시간	10점	X
1급	이상					

고시안 제3조는 제2조에서 규정한 등급별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정범위를 별표 3에 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3]

(재)인증기준의 인정범위(제3조제1항 관련)

가. 발명교육 이수실적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발명교육 이수실적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지도자 양성 과정 등 발명교육 직무연수	인사기록카드, 교육이수 증명서
	②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또는 위탁한)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③ 종합교육연수원 및 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 발명교육 직무연수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수 ㉞ 종합교육연수원(www.kipa.org→지원사업→미래형발명인재양성→종합교육연수원) ㉟ 국가 지정 발명교사교육센터	
	④ 원격교육연수원(www.ipteacher.net) 발명교육 직무연수 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발명교육 직무연수	
	⑥ (예비교원·교원) 대학(원)에서 발명·지식재산 강의 이수실적 ※ C학점 이상, 2급에 한하여 1학점은 15시간 연수실적으로 인정	성적증명서

나. 발명교육 실무경력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발명교육 실무경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명교육 기관(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선도학교, 발명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 발명교사교육센터, 종합교육연수원 등) 근무경력	인사기록 카드, 해당기관 확인서(발명 교육 시수 포함)
	② 지식재산일반교과, 발명특허 특성화고 발명교과 지도경력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명교육 기관에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대상 발명(영재)교육·산업재산권 강의 ④ 일반학교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지도경력 ※ 연간 교육시수 16~34시간 미만(0.5년) / 34시간 이상(1년) ※ (청소년 이하 강의) 1교시(4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다. 발명대회 입상지도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발명대회 입상지도	①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5점 ②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주최: 3점 ③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 주최: 2점	결과공문, 상장사본 (지도교사 명시)
	※ 해당 연도 동일대회 최대 3건 인정	

라. 발명교육 강의실적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발명교육 강의실적	① 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인대상으로 발명(영재)교육·산업재산권 강의	해당기관 확인서 결과보고 공문, 위촉 공문
	※ (성인대상 강의) 5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마. 연구·발명 실적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
연구· 발명 실적	① 연구대회 등 가. 전국규모 연구대회(발명교육 관련 주제) ※ 1등급: 10점, 2등급: 7점, 3등급: 5점 나. 시·도규모 연구대회(발명교육 관련 주제) ※ 1등급: 7점, 2등급: 5점, 3등급: 3점 다.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 ※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7점, 장려상: 5점	선정결과 등 상장사본
	② 연구보고서 가.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결과보고서 ※ 주무교사: 10점, 참여교사: 5점 나. KCI 등재지(KCI등재후보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 ※ 제1저자·교신저자: 10점, 공동저자: 5점	결과보고서 논문 게재 논문 별쇄본
	③ 산업재산권 등록(발명자) 가. 특허 등록 ※ 1인: 10점, 2인: 7점, 3인 이상: 5점 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 1인: 5점, 2인 이상: 3점	등록증 사본
	④ 학위과정 가. 석사학위(발명교육 관련 주제): 15점 나. 박사학위(발명교육 관련 주제): 30점	학위증명서 학위논문

다.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 양식을 규정(안 제4조)

제4조(인증신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령안 제13조 제2항은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6조 제1항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 또는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인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시안 제4조는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와 재인증 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별첨 2 고시안 참조).

라.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 인증평가시험의 시행 및 과목(내용), (발명교사 및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발급 서식 등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따른 상세 내용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

제5조(인증 시행 공고 등) ①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인증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평가시험의 시행)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영 제12조제1항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시험의 과목)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인증서 등의 발급) ① 영 제13조제4항 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발명교사 인증제도는 발명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시행령안 제13조 제1항의 (i)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 (ii)평가시험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iii)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증신청의 공고는 고시안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평가시험이나 합격자 발표가 곤란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다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안 제6조는 인증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고시안 제7조는 시행령안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과목을 별표 4로 규정한다.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4]

발명교사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제7조 관련)

등급	평가시험의 과목(내용)
2급	1. 발명 내용학 가. 발명의 이해 나. 발명교육과 창의성 다. 발명과 설계 라. 발명 문제해결 과정 마. 발명과 특허출원 바. 지식재산권의 활용 2. 발명 교육학 가. 발명교육의 개념과 가치 나. 발명 교수 학습 다. 발명 학습평가 라. 교육학의 트렌드와 발명
1급	1. 발명과 지식재산 내용학 가. 지식재산의 이해 나. 지식재산의 창출 다. 지식재산의 권리화 라. 지식재산의 보호 마. 지식재산의 활용 2.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학 가.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이해

	나. 발명과 지식재산 교사의 전문성 다.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실제 라. 발명 영재교육의 이해
명인	1.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일반 가.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나.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실무경험 다.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사명감 등 2.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기획 가.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이해 나.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다.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현장적용

마. 인증협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9조)

제9조(인증협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제출서류 등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 인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2. 영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심의 3.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심사 4.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 검토·심의 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발명교사 및 예비교원의 등급별 인증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명교사의 인증 기준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고시안 제9조에서는 인증협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바.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정의(안 제10조)

제10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시안 제10조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고시안의 시행에 따른 개선 및 검토를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규정하였다.

[별첨 1] 발명교육법 시행령안

대통령령 제 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관할](#)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

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2](#)

[항](#)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협의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제목개정 2022. 5. 9.]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운영조직 구성 및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 지원 등)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지식재산 전문가의 파견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9조(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가진 전

담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를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⑤ 발명교육센터 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발명교사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 등의 교육실적 자료 작성·관리 등) ① 발명

교육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

사 인증은 2급, 1급, 명인 등급으로 구분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
2.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 및 실무경력을 갖출 것
3.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명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것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하, “예비교원”이라 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의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춘 사람은 예비 발명교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 발명교사 인증은 2급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발명교사 인증심사) ① 발명교사 인증심사는 인증평가시험

(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시험은 2급, 1급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발명교사 인증의 절차)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
2. 평가시험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인증신청서 및 인증 등급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2.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사를 인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1.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예비교원일 것
2.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④ 특허청장은 평가시험 합격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등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발명교사 예비인증) ① 특허청장은 예비교원이 제13조제3항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예비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에 의하여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발명교사 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발명교사 재인증)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인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2.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재인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재인증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부터 특허청장

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재인증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 재인증 신청서 등 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 1. 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⑥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8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

[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재교육, 연구와 각종 활동 지원 및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 업무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2조의2에 따른 선도학교 등의 운영 지원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9.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10.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보조 지원
11. 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12.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명교사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재인증 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지정 신청	신청 인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신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기관(단체)명		
	[] 기관(단체)의 대표 자		
	[] 기관(단체)의 주소 지		
	[] 운영계획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나.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현황 다. 시설·장비 보유 현황 라.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대 표 자:
4. 주 소 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 허 청 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u>소속</u>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관할</u> ----- -----.
제7조(<u>발명교육센터의 설치</u>)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u>발명교육센터</u> (이하 “ <u>발명교육센터</u> ”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u>지도교사 확보 계획</u> 6. ~ 8. (생략) 9. 그 밖에 <u>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u>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제7조(<u>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u>) ① ----- <u>발명교육센터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u> (이하, “ <u>발명교육센터 등</u> ”이)-----.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운영조직 구성 및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u> ----- 6. ~ 8. (현행과 같음) 9. ----- <u>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운영과</u> -----

정하는 사항	-----
제8조(<u>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u>) 특허청장은 <u>발명교육센터</u> 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u>발명교육센터 등의 운영 지원 등</u>) ----- <u>발명교육센터 등</u> ----- -----.
1. <u>발명교육센터</u> 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 <u>발명교육센터 등</u> ----- -----
2. <u>발명교육센터</u>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u>발명교육센터 등</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지도교사</u> 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u>지도교사 등 운영인력</u> ----- -----
<신설>	5. <u>지식재산 전문가의 파견 지원</u>
5. 그 밖에 <u>발명교육센터</u>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6. ----- <u>발명교육센터 등</u> ----- -----
제9조(<u>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u>) ① <u>발명교육센터</u> 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u>자격증</u> 을 가진 <u>지도교사</u> 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u>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u>) ① <u>발명교육센터 등</u> ----- ----- ----- <u>자격증</u> (이하, “정교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가진 전담 <u>지도교사</u> 를 두어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

② 발명교육센터 등-----

-----.

③ 발명교육센터 등의 지도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발명교육센터 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를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⑤ 발명교육센터 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발명교사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 등의 교육실적 자료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 등을 ----

----- 발명교육센터 등에서 -----

-----.

② 발명교육센터 등을 ----

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 발명교육 센터 등에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2급, 1급, 명인 등급으로 구분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
2.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 및 실무경력을 갖출 것
3.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명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것

<신 설>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하, “예비교원”이라 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의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춘 사람은 예비 발명교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 발명교사 인증은 2급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발명교사 인증심사) ① 발명교사 인증심사는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시험은 2급, 1급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신 설>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발명교사 인증의 절차)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 방법

2. 평가시험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인증신청서 및 인증 등급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

<신 설>

교육 실무경력

2.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
발명 실적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교사를 인증하는데 필요하
다고 고시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인증을 신청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
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1.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예비교원일 것

2.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
할 것

④ 특허청장은 평가시험 합
격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등 인증의 절차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발명교사 예비인증) ①

<신 설>

<신 설>

특허청장은 예비교원이 제13조제3항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예비교원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에 의하여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발명교사 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발명교사 재인증)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인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2. <u>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u> <u>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u> <u>발명 실적</u> 3. <u>그 밖에 특허청장이 재인</u> <u>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고시</u> <u>하는 사항</u> ② <u>제1항의 재인증신청은 유</u> <u>효기간이 만료되는 해부터</u> <u>특허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u> <u>등에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u> <u>하여야 한다.</u> ③ <u>특허청장은 재인증심사</u> <u>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u> <u>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u> <u>야 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u> <u>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교사</u> <u>재인증신청서 등 재인증에</u> <u>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u> <u>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1조·제12조</u> (생략)	<u>제17조·제18조</u>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u>제13조</u> (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	<u>제19조</u> (업무의 위탁) ----- ----- -----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 3. (생략)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설>

<신설>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재교육, 연구와 각종 활동 지원 및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 업무

5. ----- 발명교육센터 등의 설치 및 -----

6. 법 제12조-----

7. 법 제12조의2에 따른 선도학교 등의 운영 지원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9. ----- 중소기업 등 -----

10.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보

<u>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u> <u><신 설></u>	<u>조 지원</u> <u>11. 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u> <u>12.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 지원</u>
---	---

부칙 및 별지서식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명교사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재인증 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u>
별지 제1호서식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별지 제1호서식 -----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명교육 개발원의 []지정 []변경을 신 청합니다.	----- ----- 시행령 제17조제2항 ----- ----- -----
별지 제2호서식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 ----- 시행령 제17조제6항 ----- -----

[별첨 2]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안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및 재인증 기준) ① 인증심사를 위한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인증심사를 위한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등급별 재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성적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재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인증 받고자

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재인증 접수 시작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조(인증신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인증 시행 공고 등) ①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인증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평가시험의 시행)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영 제12조제1항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시험의 과목)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인증서 등의 발급) ① 영 제13조제4항 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인증협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제출서류 등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2. 영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심의
3.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심사
4.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 검토·심의
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회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 호, 2022. .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급별 인증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등급	필수요건			선택요건(2항목 충족)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선행 등급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지식재산 능력시험
2급	4학점 또는 연수 6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1급	연수 12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3년	-	15점	20시간	15점	500점 이상
명인	연수 18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90시간 이상)	7년	1급 발명 교사	30점	40시간	30점	600점 이상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 2]

등급별 재인증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등급	선택요건(1항목 충족)					비고 (평가 시험)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2급	연수 30시간 이상	1년	10점	10시간	10점	X
1급						

(재)인증기준의 인정범위(제3조제1항 관련)

가. 발명교육 이수실적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발명교육 이수실적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지도자 양성 과정 등 발명교육 직무연수	인사기록카드, 교육이수 증명서
	②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또는 위탁한)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③ 종합교육연수원 및 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 발명교육 직무연수	
	㉞ 종합교육연수원(www.kipa.org→지원사업→미래형발명인재양성 →종합교육연수원)	
	㉟ 국가 지정 발명교사교육센터	
	④ 원격교육연수원(www.ipteacher.net) 발명교육 직무연수 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발명교육 직무연수	성적증명서
	⑥ (예비교원·교원) 대학(원)에서 발명·지식재산 강의 이수실적 ※ C학점 이상, 2급에 한하여 1학점은 15시간 연수실적으로 인정	

나. 발명교육 실무경력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발명교육 실무경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명교육 기관(광역발명교육지원 센터,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선도학교, 발명영재교육원, 발명영재 학급, 발명교사교육센터, 종합교육연수원 등) 근무경력	인사기록 카드, 해당기관 확인서 (발명 교육이수 포함)
	② 지식재산일반교과, 발명특허 특성화고 발명교과 지도경력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명교육 기관에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대상 발명(영재)교육·산업재산권 강의	
	④ 일반학교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지도경력 ※ 연간 교육이수 16~34시간 미만(0.5년) / 34시간 이상(1년) ※ (청소년 이하 강의) 1교시(4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다. 발명대회 입상지도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발명대회 입상지도	①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전국학 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5점	결과공문, 상장사본 (지도교사 명시)
	②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주최: 3점	
	③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 주최: 2점	
	※ 해당 연도 동일대회 최대 3건 인정	

라. 발명교육 강의실적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발명교육 강의실적	① 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인대상으로 발명(영재)교육·산업재산 권 강의 ※ (성인대상 강의) 5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	해당기관 확인서, 결과보고 공문, 위촉 공문

마. 연구·발명 실적

항목	인정범위	증빙서류
연구· 발명 실적	① 연구대회 등 가. 전국규모 연구대회(발명교육 관련 주제) ※ 1등급: 10점, 2등급: 7점, 3등급: 5점 나. 시·도규모 연구대회(발명교육 관련 주제) ※ 1등급: 7점, 2등급: 5점, 3등급: 3점 다.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 ※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7점, 장려상: 5점	선정결과 공문, 상장사본
	② 연구보고서 가.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결과보고서 ※ 주무교사: 10점, 참여교사: 5점 나. KCI 등재지(KCI등재후보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 ※ 제1저자·교신저자: 10점, 공동저자: 5점	결과보고서 논문 게재 증명서, 논문 별쇄본
	③ 산업재산권 등록(발명자) 가. 특허 등록 ※ 1인: 10점, 2인: 7점, 3인 이상: 5점 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 1인: 5점, 2인 이상: 3점	등록증 사본
	④ 학위과정 가. 석사학위(발명교육 관련 주제): 15점 나. 박사학위(발명교육 관련 주제): 30점	학위증명서, 학위논문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제7조 관련)

등급	평가시험의 과목(내용)
2급	- 발명 내용학 - 발명의 이해 - 발명교육과 창의성 - 발명과 설계 - 발명 문제해결 과정 - 발명과 특허출원 - 지식재산권의 활용 - 발명 교육학 - 발명교육의 개념과 가치 - 발명 교수 학습 - 발명 학습평가 - 교육학의 트렌드와 발명
1급	- 발명과 지식재산 내용학 - 지식재산의 이해 - 지식재산의 창출 - 지식재산의 권리화 - 지식재산의 보호 - 지식재산의 활용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학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이해 - 발명과 지식재산 교사의 전문성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실제 - 발명 영재교육의 이해
명인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일반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실무경험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사명감 등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기획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이해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관련 상황문제에 대한 현장적용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발명교사 [] 인증
[] 재인증 신청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 등급	[] 2급 / [] 1급 / [] 명인			
신청 구분	[]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정교사 자격증 소지 예정자			
응시 지역				
신청인	성 명		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이 메 일			
	소속기관 (기관명, 주소)			
첨부 서류	1. 인증 등급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 정교사 자격증 소지 예정자는 재적사항 나.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다. 발명대회 입상지도 실적,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 실적 라. 그 밖에 특허청장이 (재)인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항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사 [] 인증 / []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발명교사 인증서

성명 :

생년월일 :

인증등급 :

인증번호 :

인증기간 :

위 사람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특 허 청 장

직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

성명 :

생년월일 :

인증등급 : 2급

인증번호 :

인증기간 :

위 사람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 발명교사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특허청장

직인